

의안번호	2208763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1.
추 계 번호	25B1265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자본금)	공사의 자본금은 <u>10조원</u> 으로 하되, 정부 등이 출자함 ※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자본금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(안 제5조)
 - 개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함)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하는 것임
 - 해양수산부에 따르면, 2024년말 기준으로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, 납입자본금은 3.1조원으로, 그중 정부의 지분이 1.6조원(50.81%)이고, 그 외에 한국산업은행(20.80%), 한국수출입은행(17.48%), 한국자산관리공사(3.32%)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음

[표 1]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요주주 현황

(2024.12월말 기준, 단위: 주수, 원, %)

주주현황			수량	지분금액	지분율	지분율 (배당기준)
정부	배당주식	기재부(일반회계)	249,297,013	1,246,485,065,000	39.77	39.77
	배당주식	해수부(일반회계)	69,164,626	345,823,130,000	11.04	11.04
	소 계		318,461,639	1,592,308,195,000	50.81	50.81
정부 외	배당주식	한국산업은행	130,392,669	651,963,345,000	20.80	20.80
	배당주식	한국수출입은행	109,557,908	547,789,540,000	17.48	17.48
	배당주식	한국자산관리공사	20,834,757	104,173,785,000	3.32	3.32
	배당주식	기타(해운사 등)	47,528,086	237,640,430,000	7.59	7.59
	소 계		308,313,420	1,541,567,100,000	49.19	49.19
합 계			626,775,059	3,133,875,295,000	100.00	100.00

자료: 해양수산부

- 현행법 제12조제2항¹⁾은 공사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, 제15조²⁾는 국가가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손실 보전이나 상환 보증 사례는 없었음
- 현행법 제16조³⁾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(231억원), 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(75억원) 등 2025년 기준 313억 5,600만원의 비용 보조를 하고 있음

- 1)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 제12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.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 2.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
 3.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
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
-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,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.
- 2)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 제15조(상환 보증) 국가가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.
- 3)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 제1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[표 2] 공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용 보조 등 현황(2025년)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사업명	2025년 투입예산
1	수출입 물류 공공·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	706
2	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사업	23,050
3	국가필수선박제도 운영	7,500
4	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	100
합 계		31,356

자료: 해양수산부

-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할 경우, 현행법이 공사의 자본금을 정부 등이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 추가 출자를 위한 정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공사의 법정자본금 확대 후 정부의 추가 출자 규모, 출자 방식, 출자 시기 등은 공사의 재무상태,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그 규모·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